

# 베냉 (Benin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 및 특정 회사의 관리자	민간 및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법에 적용받는 근로자	적용대상 확대
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.6% / 없음 / 6.4%	3.6% / 없음 / 6.4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 / 법정 월 최저임금	없음 / 법정 월 최저임금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	60세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	-
노령연금 지급률	최초 가입기간 1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을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	최초 가입기간 1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을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	-
일시금	가입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월 소득액 x 가입연수	가입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월 소득액 x 가입연수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0년
- 현행법 : 2003년(사회보장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민간 및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법에 적용받는 근로자
- 임의적용 :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이전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
- 적용제외 : 자영자, 농업 종사자, 조합원, 견습생, 수습직원, 기술학교 학생 (상호기금에서 자영자, 농업 종사자, 조합원, 및 비정규부문 근로자에 대한 노령급여 임시적용)
- 특별제도 : 공무원

## 4

###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월 소득의 3.6%, 임의적용의 경우 당연적용 기간 중 최종 소득의 10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최저임금(40,000 CFA francs)
  
- 자영자
  - 해당 없음
  
- 사용자
  - 월 임금지급총액의 3.6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최저임금(40,000 CFA francs)
  - 20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자인 경우 월납, 미만인 경우 분기납
  
- 정부
  -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
    - 60세 이상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
    - 조기연금은 55세 이상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
    - 가입기간은 적용대상 고용에 18일 또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을 의미하며, 현금 출산급여 및 산재급여 수급기간도 포함
   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   -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적용대상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중단됨
    - 노령연금은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로 지급 가능
  - 노령청산금
    - 60세 이상,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
    - 가입기간은 적용대상 고용에 18일 또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을 의미하며, 현금 출산급여 및 산재급여 수급기간도 포함
  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
    - 소득활동능력의 66.7% 상실로 판정되고 가입기간이 장애 발생 전 12개월 중 6개월을 포함, 60개월 이상인 경우(장애가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 면제)
    - 가입기간은 적용대상 고용에 18일 또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을 의미하며, 현금

출산급여 및 산재급여 수급기간도 포함
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에 상시간호를 요하는 경우 지급
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같은 액수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연금은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로 지급 가능

## ○ 유족연금

### 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또는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었던 경우
- 가입기간은 적용대상 고용에 18일 또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을 의미하며, 현금 출산급여 및 산재급여 수급기간도 포함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가입자의 사망 직전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미망인 또는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었던 홀아비, 사망자와의 사이에 포태했거나 자녀가 있는 미망인, 19세 미만의 부양자녀(견습생, 학생,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지급 중단
- 재혼청산금 : 유족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
- 유족연금은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로 지급 가능

### 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에게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경우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가입자의 사망 직전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미망인 또는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었던 홀아비, 사망자와의 사이에 포태했거나 자녀가 있는 미망인, 19세 미만의 부양자녀(견습생, 학생,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

## 6

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 ○ 노령연금

### • 노령연금

- 최초 가입기간 1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때 12개월의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
- 월 평균소득은 마지막 5년 가입기간에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소득의 1.66%
-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구 출국하는 경우 또는 60세부터 65세 까지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(해당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 대상) 환급 가능
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 청구되는 때 1년마다 5%씩 감액되며,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부터 전액 지급
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- 법정 월 최저임금은 40,000 CFA francs
- 월 연금액은 가입자의 최초 가입기간 15년간 월 평균소득의 8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월 최대 연금액은 각료회의에서 지정함

- 연금급여액은 사회보험제도 재정에 근거하여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노령청산금
  - 가입자의 최근 5년간 월 평균소득액 x 가입연수(12개월 단위)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 - 최초 가입기간 1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의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
  - 가입자가 60세 도달 전 연금이 청구되는 매 1년마다 6개월의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
  - 월 평균소득은 마지막 5년 가입기간에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소득의 1.66%
  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 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40,000 CFA francs
  - 월 연금액은 가입자의 최초 가입기간 15년간 월 평균소득의 8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월 최대 연금액은 각료회의에서 지정함
 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액의 40%(최대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3배)
  - 가입자는 2개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으며, 전체 지급액은 지급액이 가장 많은 연금 100%에 나머지 연금액의 50%를 합산
  - 연금급여액은 사회보험제도 재정에 근거하여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
 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40%를 유족배우자에게 지급. 유족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균분지급하며 홀아비는 첫 번째 사망배우자에 대한 연금만 수급할 수 있음
  - 재혼청산금 : 6개월분의 배우자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고아연금 : 자녀 1명인 경우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0%, 2명 이상인 경우 40%를 지급하며, 외동 완전 고아의 경우 30% 지급. 수급 가능한 자녀의 수가 변경되면 연금액 재계산
  -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
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산재제도 유족급여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음. 전체 금액은 산재 유족연금의 100%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산업재해 유족연금 부분의 합계액
  - 연금급여액은 사회보험제도 재정에 근거하여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유족청산금
  - 6개월 가입기간 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80개월인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개월분을 지급. 수급권 있는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균분지급하며, 수급권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에게 지급

- 노동공공운영부(Ministry of Labor and Public Administration)
  - 전반적 감독 제공
  - [www.travail.goub.bj](http://www.travail.goub.bj)
  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 - 3자 위원회와 위원장의 관리 하에 운영되며,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함
  - [www.cnssbenin.org](http://www.cnssbenin.org)

<2019년 ISSA 자료>